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 2024.3.12


여수시 조례 제2039호

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39호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수립하는 경우”를 “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”을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”를 “법 제21조에 따르며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제5조(심의회의 기능) ① -----
1. 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	1. ----- -----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2.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	2. ----- 공유재산 관리계획 -----
3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3. ~ 7. (현행과 같음) 8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8. (생 략)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②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재산의 취득·처분	<u><삭 제></u>
4. (생 략)	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<u>법 제21조 제1항에</u>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<u>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(무상사용기간)----- -----<u>법 제21조에</u> <u>따르며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